

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 
뒷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 
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  
보시기 바랍니다.

# 국외부재자신고서

접 수	번호	
	일시	
	기관명	
	접수자	(서명)

성명 <sup>1)</sup>	한글	영문 (대문자)			
여권번호		* 여권 번호는 왼쪽부터 기재합니다.			
국외부재자 구분 <sup>2)</sup> (해당란에 ☑표)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등록자	주민등록번호			
		주소 (주민등록표상)	(사도)	(구사군)	(읍면동)
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거소 신고자	국내거소 신고번호			
		국내거소 신고지	(사도)	(구사군)	(읍면동)
연락처 *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전화번호 <sup>3)</sup> (가정직장 등)	(국가번호)	(지역번호)	(전화번호)	
	휴대전화 <sup>3)</sup>				
	전자우편 <sup>4)</sup> (E-mail)	@			
국외거소 <sup>5)</sup> (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)  *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거류국명		우편번호		
	필수 기재사항 * 영문 또는 로마자 대문자 로만 기재	주소	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관을 가로 신고할 사람 (☑표한 후 "주소"란에 공관명만 기재)	
	임의 기재사항 * 현지 통용어 로도 기재 가능	현지어주소 · 통용성명 · 문패명 등			
국외부재자 신고사유 <sup>7)</sup> (해당사유에 ☑표)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	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·군무원	국방부장관 또는 부대장의 직명(성명) _____ (인)			
본인은 「국적법」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4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며,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정보, 주민등록정보, 수형정보, 국내거소신고정보,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					
불임 : 여권사본 <sup>8)</sup> 1부. <span style="float: right;">년 월 일</span> 신고인 <sup>9)</sup> 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					
구·시·군의 장 귀하					

\*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본 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우편으로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※ 유의 사항

1. 이 신고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파병군인이나 군무원은 아래 “작성요령 7.” 참조

2. 이 신고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 또는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는 등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
※ 작성 요령

1. “성명”란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(영문포함)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.

☞ 다만,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을 적습니다.

2. “국외부재자 구분”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 표시 후 ‘주민등록번호’와 ‘대한민국 주소’란을 적고,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란에  표시 후 ‘국내거소신고번호’와 ‘국내거소신고지’란을 적습니다.

3. “전화번호”와 “휴대전화번호”란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·사무실 등의 전화번호(국가번호-지역번호-전화번호)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☞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 요건확인, 투표용지 등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, 투표기간·장소 등 안내,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됩니다.

4. “전자우편(E-mail)”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·발송하는 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 송부,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통지, 이의신청 결과 안내, 투표기간·장소·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
5. “국외거소”란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반드시 점선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
▪ “필수 기재사항”란의 거류국명과 주소는 로마자 또는 영문대문자로 적어야 합니다.

▪ “임의 기재사항”란에는 거류국의 집배원 등이 우편물을 정확히 배달할 수 있도록 현지 통용어로 주소·통용성명·문패명(○○썸택)등 배달 참고사항을 적습니다.

☞ 다만, 직장·생업·이사·주소불확정·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지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 표시 후 “주소란”에 공관명만을 기재합니다.

6. “투표 예정공관”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
7. “국외부재자 신고사유”는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.

☞ 파병군인이나 군무원은 국방부장관 또는 부대장의 확인(인)을 받은 것으로 여권사본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8. “여권사본”은 사진·성명·생년월일 등 여권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A4용지(Letter지 포함)에 깨끗하게 복사해서 첨부해야 합니다.

9. 끝부분의 “신고인”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